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자치법규 공포(규칙 768호)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23조에 따라 제·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.

1. 공포 내역

연번	공포번호	자치법규명	주요내용	소관부서	비고
1	768	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	가. 행정기구 개편(재난안전과, 의회 정무팀 신설)에 따른 업무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나. 전결권 신설 → 감사담당관의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관련 업무 → 환경과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→ 위생과의 민원 업무 중 세부사항 다. 전결권 삭제 → 총무과의 교육훈련 업무 중 세부사항 → 자치행정과의 취약구조 개선사업 업무 → 보건행정과의 영양사 선·해임 신고 업무 라. 전결권 조정 → 재난안전과의 시설물 관리 세부사항 (국장→부구청장)	기획예산과	규칙 (개정)

2. 공포(발령) 방법 : 구보 게재

3. 공포(발령) 일자 : 2015. 3. 6.(금)

붙임 : 규칙공포문 1부. 끝.

★주무관 황세윤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 기획예산과장 김용운 기획경제국장 문경수
부구청장 직무대 주윤중 구청장 03/03
리 신연희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3368 () 접수 ()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482 /전송 02-3423-8881 / hshowin82@gangnam.go.kr / 대시민공개